- 덕남정수장 노후시설 개량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-

서 면 질 의　답 변 서

전남광주통합특별시
상수도사업본부　기술부

❑ 서면질의 답변

구 분	질의내용	답변내용
사업수행능력 평가작성안내서 (P.7, 10)	1) **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입찰 참여 사업분야와 다르더라도 경력과 실적 평가 시 80%를 인정하되,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100%를 적용**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. **그런데 10p**에는 **분야별 참여기술인이 해당 전문분야와 같은 설계업무(준공금액 2억원 이상)를 수행한 경우, 기존 수행 사업분야가 제시된 사업분야**(상하수도 분야 기본계획, 기본설계, 기본 및 실시설계, 실시설계 용역)와 **다르더라도 80%를 인정**한다고 되어 있어 **두 문구의 인정 비율(100%/80%)이 서로 다릅니다.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경력·실적 인정비율은 어느 기준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.**	○ 사업수행능력평가 안내서(나. 항목별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, 10페이지) “분야별 참여기술인 실적평가의 안내사항”과 같이 평가함을 알려드립니다. ※ 사업책임기술인의 실적 인정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평가함. ※ 복합된 실적에 대해서는 실적증명서 상에 수행금액이 구분 표기되어 있어야 하며, 인정분야 준공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실적으로 인정함. ※ 단, 분야별 참여기술인이 해당 전문분야와 같은 설계업무(준공금액 2억원 이상)를 수행한 경우,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제시된 사업분야(상하수도 분야 기본계획, 기본설계, 기본 및 실시설계, 실시설계 용역)와 다른 경우라도 80%를 인정함. 이 경우에도 공고일로부터 10년간(해외근무시 기준기간 연장) 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2조제6호의 발주청에서 발주하여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(장기계속 차수, 기성준공 제외)

구 분	질의내용	답변내용
사업수행능력 평가작성안내서 (P.44)	2) **개발·투자·활용실적 양식 주1)에 증빙서류(실적증명서)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으나**, 해당 실적은 통상 별도의 실적증명서가 발급되지 않고 특허증, 투자내역서, 활용현황 확인서 등 **대체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**입니다. **이 경우 실적증명서 대신 상기와 같은 대체 증빙서류를 첨부하는 것으로 갈음해도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.**	○ 사업수행능력평가 안내서에 안내한 내용에 따라 관련자료를 작성하여 제출 바랍니다. - 평가안내서 주요내용 ○ 평가자료 작성시 유의사항(4페이지) 마.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,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 · 신용도 ·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· 업무중복도 · 해외 설계수행실적 ·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· 참여건설기술인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실적 등은 “국토교통부 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 등 지정”(국토교통부 고시)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,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사업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함. 이 경우 공고일 이후 발행된 확인서(회사 실적증명의 경우 준공일 이후)이어야 하며 제시근거 확인을 위해 첨부 자료 해당 부분에 황색 형광펜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. ※ 참여업체가 제출한 서류(자료)에 한하여 평가하며, 평가참가자의 과실로 자료가 누락되었을 경우 추가 평가하지 않습니다. ○ 항목별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(투자실적 평가, 15페이지) -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 제출 ○ (활용실적 평가, 15페이지) -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」제34조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·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-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